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8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고 및 금고지정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의결 사항,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위촉해제 및 위원회 제척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금고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지정 방법 등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분야 전문가
4.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였거나 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경력이 있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공동관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경력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자문·고문·대리 등을 행하고 있거나 자문·고문·대리 등을 했었던 경력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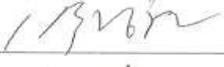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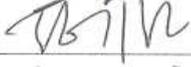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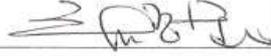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 연번 | 의 원 명 | 서 명 | 비 고 |
|----|-------|--------------------------------------------------------------------------------------|-----|
| 1 | 김재영 |  | |
| 2 | 박재호 |  | |
| 3 | 박희진 |  | |
| 4 | 김재수 |  | |
| 5 | 김동배 |  | |
| 6 | 송미영 |  | |
| 7 | 조완휘 |  | |
| 8 | 장기현 |  | |
| 9 | 최종훈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